

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

(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80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5일

발 의 자 : 이영실, 권수정, 권순선,
김경영, 김경우, 김제리,
김화숙, 박기재, 이병도,
조상호, 홍성룡 의원(11명)

1. 제안이유

-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, 장애인 돌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대부분이 열악한 근로 조건에 놓여 있음. 이로 인한 돌봄의 질 저하가 우려되지만 관계법령에 구체적인 개선책은 미비하여,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.
- 또한,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로환경 및 권익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,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.

2. 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, 제5조)
- 나.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다.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"장애인활동지원인력"이라 함은 「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라 제2조제6호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
2.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,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처우개선 사업 등)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

2.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, 조사, 연구 사업

3.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

4. 그 밖에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)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「근로기준법」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·조치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·폭행·성희롱·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문서번호

2021101300000052

미첨부 사유서 (1호)

요청인 : 보건복지위원회

담당 : 조도형 과장
이원상 팀장
이혜린 예산분석관

접수일 : 2021.10.13

회신일 : 직접입력

내용문의 : 02-2180-7955

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
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제6조에서 처우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

-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344,000천원으로 연평균 68,800천원임
- 추계의 전제
 - 제5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실태조사비용은 서울시 유사사업을 준용하여 추계
 -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사업은 서울시 복지정책실의 유사사업을 참고하여 추계
 - 비용은 2022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 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 비용(합계) ≍ 344,000천원
 - 총 비용 =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+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·연구사업+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·훈련사업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합 계
세입	-	-	-	-	-	-	-
	소계 (a)	-	-	-	-	-	-
세출	제5조 (실태조사비)	22,000	-	-	22,000	-	44,000
	제6조 (조사연구비)	20,000	20,000	20,000	20,000	20,000	100,000
	제6조 (교육·훈련사업비)	40,000	40,000	40,000	40,000	40,000	200,000
	소계 (b)	82,000	60,000	60,000	82,000	60,000	344,000
총비용 (b-a)		82,000	60,000	60,000	82,000	60,000	344,000

○ 실태조사비용 ≍ 44,000천원

$$= 22,000\text{천원} \times 2\text{회}$$

※2021년 노동공정상생담당관 감정노동자 인식실태조사비 22,000천원

○ 조사연구사업비용 ≍ 100,000천원

$$= 20,000\text{천원} \times 5\text{년}$$

※2021년 복지정책실 자활사업 조사,연구비 20,000천원

○ 교육·훈련사업비용 ≍ 200,000천원

$$= 40,000\text{천원} \times 5\text{년}$$

※2021년 복지정책실 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비 40,000천원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당관 조도형

추계세계팀장 이원상

주무관 이해린

☎ 02-2180-7955

e-mail : lovelyynn91@seoul.go.kr